

#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1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1. 19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1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(2018. 12. 11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박한호

### 가. 제안이유

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, 협의회 기능, 구성, 임원 및 조직, 임기(안 제1조 ~ 제5조)
- 2) 총회 및 의결, 의안제출, 안건배부, 의견청취, 회의결과 조치(안 제6조 ~ 제10조)
- 3) 실무협의회 등(안 제11조)
- 4) 경비부담, 회계보고 및 결산, 가입 및 탈퇴(안 제12조 ~ 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이견 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”은 마포구청장이 2018.11.19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8.11.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#### [동의안 제출배경]

- 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”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와 정보의 공유 등 협력을 도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한 환경조성 등의 역할을 하는 교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입니다.
-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구성과 규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

#### [협의회 구성개요]

- 협의회 구성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대상이 되며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가 회원이 됩니다.
- 아울러, 2018.11.1일 현재 전국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243개중 서울시에는 종로구 등 19개, 지방에는 부산시 금정구 등 42개 지자체 등 총 61개의 지자체가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(별첨1)

#### [협의회 구성·참여 필요성 여부]

- 위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들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(별첨2)
- 이에따라, 우리구도 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교류 및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·지정을 받아 아동이 안전하고

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.

- 따라서, 우리 마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금번 규약의 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[예산 확보의 가능성]

-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서는 연회비 5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 제출하여 2018.12.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향후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, 협의회 가입비 5백만원은 얻어 오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[협의회 규약 조문·내용의 적법성 여부]

- 규약의 조문과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서 제158조(협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 구성 기준)에서 제102조(협의체 설립 신고 등)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적법 타당하게 작성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# [검토 종합의견]

○ 위와 같이 협의회 동의안 제출배경과 협의회 구성 개요, 협의회 구성참여 필요성, 예산확보 가능성, 규약 조문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이견 동의안을 승인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아울러, 규약 제16조(가입 및 탈퇴)에 의하면 협의회 가입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향후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있음

- 김진천 의원 권고사항

- 본 규약의 내용 중 일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권고

8. 기타 : 없음